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4호 2018. 8. 3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163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 -- 2
- 삼척시 조례 제1164호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삼척시 조례 제1165호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삼척시 조례 제1166호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66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규칙 -- 11

예 규

- 삼척시 예규 제25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예규 --- 1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90호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호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1

공 람									
--------	--	--	--	--	--	--	--	--	--

제20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8.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2018년 8월 31일

조례 제1163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

제1조(「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조(「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3조(「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6.75제곱미터(1.5m×4.5m)”를 “10제곱미터 이내”로, “1기당 기본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를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4조(「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의 개정) 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을 “농촌지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단지 지역”으로 한다.

제5조(「삼척시 도계분노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도계분노처리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를 “자율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삼척시에서 3년 이상”을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로 한다.

제7조(「삼척시 건축조례」의 개정)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삼척시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삼척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후단 중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로 한다.

제9조(「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8.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8월 31일

조례 제1164호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를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 주무관이 된다”를 “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7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노동조합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8.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8월 31일

조례 제1165호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과”를 “법 제8조 및 제15조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법」 제43조관련”을 “「도로법」 제66조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8.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8월 31일

조례 제1166호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대이리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금액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하게 하고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장 이하의 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등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7. “관람료”란 환선굴 또는 대금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동굴 내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8. “입장료”란 공원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9. “시설이용료”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10. “점용료”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공원 및 환선굴, 대금굴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관람권, 시설이용권을 각각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 ③ 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굴과 환선굴 모두 관람할 경우 입장료는 대금굴 입장료만 징수한다.
- ④ 입장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 ⑤ 대금굴의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는 통합 징수한다.

제4조(요금의 면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 2.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전문위원회
-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환선굴 시설이용료는 “별표 2”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 4. 공원구역 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 5. 관내 초등학교생
- 6. 신기면 주민
- 7. 삼척시민
- 8.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및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 9.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감면자에 대해서는 단체요금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9호의 감면시한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입증)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출입증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업주가 발급신청을 하고 시장이 발급한다.
- ③ 출입증의 발급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업주가 출입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시장은 관람시간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의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2. 시설의 입장,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3. 시설의 개·보수 및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9조(게시사항) 공원 입구 및 환선굴·대금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명칭
- 2. 시설의 관리자
- 3.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요금표
- 4. 입장 및 관람시간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굴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3. 음주 및 동굴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결제한 경우 예약을 취소할 시 입장일 7일 전까지는 결제한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80%를, 입장일 2일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70%를, 입장일 1일 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시간 경과 전까지는 결제금액의 60%를 환불하고, 지정시간이 경과된 미사용 입장권은 지정시간 경과 후부터 30분까지 결제금액의 40%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1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점용해지신고) 공원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공원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대상, 기간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제5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도 제8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8. 3.)에서 의결된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8월 31일

규칙 제566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규칙

제1조(「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를 “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삼척시장

2018년 8월 31일

삼척시 예규 제25호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예규

제1조(「삼척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개정) 삼척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출, 승인을 얻어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10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8. 3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916-20 외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54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916-20	20180831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6, 1-20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62 (오분동)	2018083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8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740	2018083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위치활용	
4		이	하	여	백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중천주소		도로명주소		도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개	3 건	3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54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리 916-20	20180831	20180831	건물신축	20090626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6, 1-20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62 (오분동)	20180831	20180831	건물신축	20090626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리 48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옹화리길 740	20180831	20180831	건물신축	20090626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8- 690호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3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8. 8. 30. ~ 2018. 9. 19.

4. 의견제출

-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도시과
- 전 화 : 033 - 570 - 3874
- 팩 스 : 033 - 570 - 3182
- E-mail : jkmom@korea.kr

4. 참고사항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부분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서식 1부.

조례 제 호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삼척시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인 (단, 용지보상비 제외)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3호 중 “포함”을 “포함한다. 단, 연면적 10분의 1 이하의 증축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삼척시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인 (단, 용지보상비 제외)사업--.
1. 「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로서 1km 이상의 도로 및 터널 신설사업	<삭 제>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서 좌, 우 양안 합계 연장이 2km 이상인 사업	<삭 제>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증축으로 연면적 1,000㎡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3. ----- 포함한다. 단, 연면적 10분의 1 이하의 증축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 의견제출자 :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18 - 2호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의료지원비 지원 근거 및 진료범위 규정(안 제5조, 제6조)
- 의료지원비 청구 및 거짓 청구 시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2) 전 화 : 033-570-4671
- 3) FAX : 033-570-4167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삼척시장

1. 의결주문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척시 저소득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의료지원비 지원 근거 및 진료범위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의료지원비 청구 및 거짓 청구 시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1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 관련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구강보건 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를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 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주치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에게서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4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용 청구서(제7조 관련)

- 사업자 등록번호 :
- 의료기관 명 :
- 의료기관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
-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

시술대상자			시술내용(치식포함)	청구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의료비 지급계좌		계좌번호 : _____ 은행명 : _____ 예금주 : _____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아동의 의료비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 치과의원 성명 _____ (인)

※ 의료비용 청구 시 첨부 서류: 청구서 원본(도장날인) + 차트사본 + 통장사본 + 영수증(원본)

삼척시장 귀하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2)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 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2.1.)

○ 보건의료 기본법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첨 2】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치과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강질환 의료비 지원 (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안 제5조)
- 산출내역

(단위:원)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계		24,000,000
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	300,000원×80명=	24,000,000

4. 작성자

작성자	건강증진과 손태도
연락처	(033) 570 - 4630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예고내용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